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8. 2. 4.

운영위원회

1. 審 查 經 過

가. 발의일자 : 2008년 1월 17일

나. 발 의 자 : 윤동규 의원 외 4인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25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34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8년 2월 1일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설명자 : 윤 동 규 의원)

가. 개정이유

2007. 5.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2007. 12. 26 행정자치부 지방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관련 질의회신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<별표1>과 같이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마련(안 제2조)
- <별표2>와 같이 월정수당 지급기준 마련(안 제3조)

3.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(專 門 委 員 김 병 욱)

-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5항에 따르면 각 시·군·구는 매년 10월 말까지 의정비심 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듬해 기초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정비는 의정활동비(교통비, 자료수집비 등)와 월정수당(월급)으로 구성되며 이를 한 해 동안 합친 금액이 연봉으로 통칭되고 있음
-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또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위원회의 결정함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審 查 結 課 : 原 案 可 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8년 1월 17 일
발 의 자 : 윤동규 의원 외 4인

1. 개정이유

- 2007. 5.11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2007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 지방의정비 지급조례 개정관련 질의회신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 골자

-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[별표 1] 과 같이 지급기준 마련(안 제2조)
-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[별표 2] 와 같이 지급기준 마련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
 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33조제1항 제3호
- 예산조치 : 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) ①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,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

②의정활동비는 영등포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③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[별표 1] 과 같다. 단,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월정수당)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.

②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일은 제2조 제2항과 같다.

③월정수당 지급기준은 [별표 2] 와 같다. 단,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4조(여비)

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현지교통비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하며 [별표 3]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2.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, 일비, 숙박비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하며 [별표4]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3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시에는 [별표 3]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등포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2조,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(제2조 제3항 관련)

구 분	의 정 활 동 비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 조 활 동 비
지 급 액	월 900,000원	월 200,000원

[별표 2]

월정수당 지급 기준표(제3조 제3항 관련)

구 분	지 급 액
월 정 수 당	3,025,000원

[별표 3]

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4조 제2항 제1호 관련)

(단위:원)
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인당)	식비 (1일당)
영등포 구의원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20,000	46,000	25,000

- 비고 : 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(동일 특별시, 광역시,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.)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 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2.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[별표 4]

국외여비 지급 기준표(제4조 제2항 제2호 관련)

(단위:달러)

구 분	항공임	일비	숙박비	식비	준 비 금		
					15일 미만	15일 이상 30일 미만	30일 이상
의 장 부위원장	1등 정액	35	166	107	140	170	195
의 원	2등 정액	30	145	81	130	155	180

- 비고 : 1.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.
2.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